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561호 2020. 11. 30(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0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14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4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0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1641-1 외 83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11.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1-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07-23	인천광역시 서구 불수대로 1641-1 (금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불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7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76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1-4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193 (청라동)	20201012	지구단위계획의 국제업무단지 지역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9-1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356번길 39 (오류동)	20121025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6-5, 318-3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33-1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7-6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31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6-8, 317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31-1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1-19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17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9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37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1-8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9번길 8 (청라동)	2011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호번호로 도로명부여	



























81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0, 가동 507호 (가정동, 상광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4번길 3 (가정동)	도로명변경	20201123	천마로 시작점의 140m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상광아파트
8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0, 가동 508호 (가정동, 상광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4번길 3 (가정동)	도로명변경	20201123	천마로 시작점의 140m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상광아파트
8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0, 가동 509호 (가정동, 상광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4번길 3 (가정동)	도로명변경	20201123	천마로 시작점의 140m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상광아파트
82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0, 가동 601호 (가정동, 상광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4번길 3 (가정동)	도로명변경	20201123	천마로 시작점의 140m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상광아파트
82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46, 301호 (가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4번길 5 (가정동)	도로명변경	20201123	천마로 시작점의 140m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상광아파트
8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46 (가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4번길 5 (가정동)	도로명변경	20201123	천마로 시작점의 140m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상광아파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1-30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201번길 18 (검암동)	멸실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18 (당하동)	철거	2008123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78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90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1호(2017.7.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도로명: 중로3-90호선, 사업명: 불로동 중로3-90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20-1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90호선)
- 명칭 : 불로동 중로3-9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3	90	12~15	12	435	292	143	-	
도로	중로	2	174	15	15	312	-	16	2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9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 변경 : 2018. 9. 10. ~ 202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90	12	집산도로	143	대3-58	중2-174	일반도로	-	1999.6.23.	-
신설	중로	2	174	15	집산도로	16	소2-28	소2-2	일반도로	-	2017.7.3.	-

##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불로동	841	도	2,346.9	775.0	인천광역시 서구					
2	불로동	823	공	14.8	14.8	인천광역시 서구					
3	불로동	520-14	구	265.0	265.0	농림축산식품부					
4	불로동	822	공	1.6	1.6	인천광역시 서구					
5	불로동	520-13	구	306.0	306.0	농림축산식품부					
6	불로동	414-3	도	144.0	5.0	김*식	고양시 일산구 *** 2132-9 2층				
7	불로동	414-2	도	16.0	7.0	김*식	고양시 일산구 *** 2132-9 2층				
8	불로동	736-14	도	64.0	11.0	국토교통부					
9	불로동	413-2	도	33.0	3.0	김*식	고양시 일산구 *** 2132-9 2층				
10	불로동	520-5	구	3,766.0	794.0	농림축산식품부					
11	불로동	736-13	도	724.0	8.0	국토교통부					
12	불로동	805	도	1,780.0	63.0	인천광역시 서구					
13	불로동	64-3	전	310.0	32.0	김*자	서구 *** 408				
						문*모	서울 노원구 *** 624 주공아파트 1511-803				
						문*모	김포시 *** 663 호수빌딩 3층 301호				
						문*모	서구 *** 324-9 백두아파트 1007호				
						문*모	서구 *** 408				

###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전주번호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불로동	841	도	한전주	8629S 604 불로지 72 L1	1	한국전력공사		
2	불로동	520-14	구	한전주	8629S 501 불로지 72 L2	1	한국전력공사		
3	불로동	520-13	구	한전주	8629S 513 불로지 72 L3	1	한국전력공사		
4	불로동	520-13	구	한전주	8629S 514 불로지 72 L4	1	한국전력공사		
5	불로동	520-13	구	한전주	8629S 422 불로지 72 L5	1	한국전력공사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도로(중로 3-90호선)
- 명 칭 : 불로동 중3-90호선 도로개설공사

##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본 사업은 불로동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421-18)
- 명 칭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4. 사업기간(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년 12월
- 변경 : 2018. 9. 10. ~ 2021. 6. 30.

## 5.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20-13번지 일원

## 6. 자원조서(변경없음)

### 1) 자금투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비 고
계	584,008	
공사비	484,008	
보상비	50,000	

### 2) 자원조달계획 :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7.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중로 3-90호선: L=143m, B=12m(전체연장 : L=435m 중 일부구간 도로개설)

8. 사용,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조서,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9.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공사기간 연장 및 후속 행정처리를 위한 시행기간 변경

# 위 치 도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8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의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1회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를 개선 함. (안 제9조제1항)

- 도로명안내판의 광고사업자가 광고주를 모집하여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를 개선 함. (안 제12조제2항)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간사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변경 함. (안 제20조제1항)
- 원인자부담금의 관리·집행 방법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2020. 8. 28.자로 전부개정 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조문이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사유로 삭제되어 현행법령에 맞게 변경 함. (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1층
- 전 화 : ☎ (032)560-4832, FAX (032)560-2786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국무조정실의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1회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를 개선 함. (안 제9조제1항)
- 나. 도로명안내판의 광고사업자가 광고주를 모집하여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를 개선 함. (안 제12조제2항)
- 다.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간사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변경 함. (안 제20조제1항)
- 라. 원인자부담금의 관리·집행 방법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2020.8.28.자로 전부개정 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조문이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사유로 삭제되어 현행법령에 맞게 변경 함. (안 제4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 3)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은”으로, “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에서 규정한 것 외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를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계상”을 “계상(計上)”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계하는”을 “하계 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연장자순”을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를 “관계 전문가 등에게”로, “수당과 기타”를 “수당과, 그 밖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필요</u>----- -----.</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u>등에 관하여</u>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u>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u>는 이 조례를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 <u>등은</u> ----- ----- ----- ----- ----- ----- ----- <u>에서 규정한 것 외에</u>----- -----.</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구 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u>경우에 한한다</u>),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 ----- ----- ----- ----- ----- <u>경우만을 말한다</u>----- ----- ----- ----- -----.</p>

②·③ (생략)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외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부담)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따라 -----  
-.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  
----- 따라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계상(計上)-----  
-.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삭제>

②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

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생략)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자의 선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 2. ~ 4. (생략)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방(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  
-----.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게 하는 -----  
-----  
-----.

제12조(광고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관계 공무원
-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생략)

③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② -----  
----- 임  
기만료 전이라도 -----  
-----.

- 1. ----- 그 밖-----  
-----
- 2. -----  
----- 수행하  
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

3. (현행과 같음)

③ -----  
-----  
----- 새  
로 -----.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 소집한다.

② -----  
----- 7  
일 전-----  
-----  
----- 긴급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 -----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연장자 순 -----  
-----.

제20조(간사) ① -----  
-----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 -----  
-----.

② ----- 수행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 -----  
----- 관계 전문가 등에게 -----  
----- 수당과, 그 밖의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814호

## 수용재결신청 열람 · 공고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4차,20수용1177)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1.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 업 명 :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열람기간 : 2020.11.30. ~ 2020.12.1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열람기간: 2020.11.30. ~ 2020.12.15.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반과, ☎ 032-560-4485)
  - 제출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20.11.30. ~ 2020.12.15. (15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75번지 외, 총 15필지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등의 표시  
: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50 컨테이너 외, 총4건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65 영업권 1건
  
- 기 타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수리 불가

<b>의 건 서</b>	
<input type="checkbox"/> 사 업 명 :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4차	
1. 제 목	수용재결신청 의견 제출 (20수용1177)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 폰 :</p> <p><b>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b></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